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보고서

2021. 6. 9.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보고서 요약]

■ 법관평가제도 TF 단계에서 논의된 법관평가 결과 활용방안

- (제1안) 법관 개인의 자기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자는 방안
- (제2안) 평정권자의 재량으로 근무평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
- (제3안) 평정권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평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
- (제4안) 근무평정 외 연임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 경과

- 위 네 가지 법관평가 결과 활용방안 중 제2안인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위 방안의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평가자인 법관들이 요구하는 현행 법관평가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음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 시행을 위해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협의를 거쳐, 법관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한다.
- ② 법관평가기구에는 법관을 비롯한 외부 위원이 참여한다.
- ③ 법관평가기구는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서 권고된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사항(법관평가의 통일적 기준 등 2021. 6. 9.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쟁점별 결정사항)을 새로운 법관평가제도에 반영하도록 한다.



1.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의 구성배경 및 논의방식

가. 구성배경

- 2019. 9. 26.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법관평가¹⁾ 논의가 제안된 이후²⁾ 2020. 4. 9. 제5차 회의에서 법관평가와 관련된 TF 구성 및 추후 분과위원회 전환에 관하여 논의
- 법관평가제도 TF(변호사위원 4명, 법관위원 4명)³⁾가 2020. 5.경 구성되어 1~4차 회의를 진행한 후 변호사 위원들과 법관 위원들의 각 중간 보고서⁴⁾를 2020. 9. 24.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에 보고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에서, 법관평가제도 TF를 관련 분과위원회로 전환한 후 중간보고서의 각 쟁점에 대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면서, 관련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법관 4인, 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을 법관위원과 변호사위원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제안’⁵⁾에 대하여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였고, 위 분과위원회를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정함

1)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또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이하 ‘법관평가’라 함(다만, 법관에 대한 다른 평가방식과 명확한 구별이 필요한 경우만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라고 기재함)

2) 제안된 법관평가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는, 2019. 11. 13.부터 2019. 11. 21.까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2019. 11. 19.부터 2019. 11. 27.까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 설문조사를 실시함

3) 손창열, 송수현, 이광수, 이민 변호사위원 및 김연주, 박지숙, 윤성식, 이원근 법관위원(가나다순)

4)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 ‘국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검토보고서’, ‘법관평가제도 TF 운영지원단에서 작성한 기초보고의 외국사례 및 해외연수법관으로부터 취합한 법관평가제도 비교법적 자료’, ‘법관평가에 대한 법관 및 변호사 대상 각 설문조사 결과’,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를 비롯한 관련 책과 논문’,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각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규정 및 평가표’, ‘법관평가제도 TF 회의 과정에서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회의를 진행 후 각 중간보고서 작성

5)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법관과 변호사위원을 동수로 TF를 운영한 결과 공동된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주제에 대해 팽팽한 의견이 도출’ 및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하며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위원을 추가로 영입하는 경우 다른 의견이 개진되어 또 다시 분열될 소지가 있지만 법관위원과 변호사위원이 동의하는 외부위원이 참여한다면 어떤 면에서 casting vote도 가질 수 있고 3자의 참신한 시각도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함’ 등의 의견들이 있었음



- 법관평가제도 TF 위원 8인 및 문진헌(내일신문사 편집위원, 위원장, 법관위원 추천), 김주미(한국법학원 연구원, 변호사위원 추천) 외부위원으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 2021. 4. 19.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5차 회의부터 이광수 변호사위원이 김관기 변호사위원으로 교체됨

■ **위원 명단**

구분	소속 및 직위(직급)	성명	생년	비고
외부위원 (2명)	내일신문사 편집위원	문진헌	1960	위원장
	한국법학원 연구원	김주미	1985	
변호사 (4명)	법무법인(유) 총정 (사법연수원 14기)	손창열	1958	대한변협 추천
	김앤박 공동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0기)	김관기	1963	대한변협 추천
	법무법인(유) 한별 (사법연수원 35기)	송수현	1965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이민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6기)	이민	1976	대한변협 추천
법관 (4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4기)	윤성식	1968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9기)	이원근	1972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서울행정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37기)	김연주	1982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안양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42기)	박지숙	1986	

나. 논의방식의 확정배경

1) 법관평가제도 TF 단계에서 논의된 법관평가 결과 활용방안⁶⁾

6) 법관팀 중간보고서 제8 내지 9면 참조



- (제1안) 법관 개인의 자기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자는 방안
- (제2안) 평정권자의 재량으로 근무평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
- (제3안) 평정권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평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
- (제4안) 근무평정 외 연임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2)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1. 9.)에서 논의방식을 확정

■ 법관평가제도에 대한 기초적 고려사항 확인

● 변호사 위원들

-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법 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관평가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
- 법관의 사법서비스 품질개선, 국민 대중에 대한 교육적 효과, 사법권 독립의 제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자료의 제공 등의 시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법관평가제도 도입 이후 재판장의 고압적 태도나 폭언, 모욕적 언사 등이 줄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평가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
- 법관평가제도의 순기능과 사법부의 개혁의지, 변호사회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제도의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세부 평가기준 및 운영 방안 등을 재정비한 후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법관 위원들

- 모든 법관에 대해 법관평가표가 제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관평가를 받지



않는 법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변론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 내지 재판 외 업무를 맡고 있는 법관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법관평정 내지 법관인사 등에 반영할 경우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법원의 공식적인 법관평정 내지 법관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음
- 변호사는 사건의 대립하는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 내지 피고인을 대리하면서 그의 이익을 주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공판검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들은 각 사건에 대하여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지위에서 법관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등 특정 단체의 의견만을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사 왜곡의 우려 및 편중된 의견 반영 등의 문제가 있음

▣ 법관평가제도 TF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공통된 의견 확인

- 법원 외부의 다양한 평가 중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전문성, 윤리성 및 역할에 비추어 그 의의가 큼
- 법관평가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통일적인 관리·감독기구로서 법관평가기구가 필요함

▣ 법관평가 결과의 활용방안[법관 개인의 자기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자는 방안(제1안), 평정권자의 재량으로 근무평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제2안), 평정권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평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제3



안), 근무평정 외 연임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제4안)]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야 세부적인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원장의 제안에 위원들이 동의하여 이에 관하여 먼저 논의를 시작

- 법관평가제도 TF에서 변호사 위원들은 ‘평정권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제3안)’을 표방하였음. 즉, 인사권자의 재량적 반영(제2안)은 반영여부의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수적 반영(제3안)의 입장을 유지하되, 다만 평정항목 중 법관평가를 별도의 독립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일정기간(5개년) 후의 목표로 명문화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법관평가 결과를 성실성 등 기존 법관 근무평정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기로 함(변호사팀 중간보고서 제17면)
- 법관 위원들은 현재의 법관평가는 그 한계로 인하여 법관평정 내지 법관인사에 반영하기 어렵고 현행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관평가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법관평가의 시행 경과를 검토하면서 평정권자의 재량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방하였음(법관팀 중간보고서 제10면, 제28면)
- **법관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우선적 논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 법관평가가 가지는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법관평가 자체가 가지는 한계 및 현행 법관평가 운영상 존재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변호사 위원들이 제시한 ‘평정권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전제로 논의를 하면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현행 법관평가가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과 관련한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법관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안’은 적절하지 않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임

-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가 법관의 인사에 반영된다는 것’을 변호사가 없는 상대방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평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법관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건들이나 대비에 관한 논의도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단계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평가 결과의 각 활용방안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관평가가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유의미한 것이 없음
- 법관평가제도 TF에서 현행 법관평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회의를 통하여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법관평가의 활용방안을 제2, 3안으로 제한하여 확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음

- ▣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관평가 결과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네 가지 안 중 제2안인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위 방안의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평가자인 법관들이 요구하는 현행 법관평가의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위원들도 이에 동의함

3)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제6차 회의)

7)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 제1차 회의(2020. 11. 9.) 제2차 회의(2020. 12. 14.), 제3차 회의(2021. 1. 11), 제4차 회의(2021. 2. 2.), 제5차 회의(2021. 4. 19.), 제6차 회의(2021. 5. 24.)



- ▣ 법관 위원들이 제시하는 법관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쟁점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건의할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을 정함

2.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의 쟁점별 결정사항

가. 근무평정 항목에 법관평가 결과 항목 추가 신설 여부

1) 결정사항

근무평정 항목에 별도의 항목으로 법관평가 결과를 신설하지 않고, 법관평가 결과가 법관의 근무평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근무평정 항목의 세부항목 또는 설명으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명시함

2) 법관평가제도 TF에서 논의된 의견

▣ 변호사 위원들

- 전체 법관 대상 근무평정 항목에 변호사의 법관평가 항목을 추가 신설
- 평정항목 중 법관평가를 별도의 독립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일정기간(5개년) 후의 목표로 명문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법관평가 결과를 성실성 등 기존 법관 근무평정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함

▣ 법관 위원들

- 법관평가 결과를 근무평정 항목에 추가하게 된다면, 결국 평정권자로서는 법관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므로, 법관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법관의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 또한, 법관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평정권자가 기존 근무평정 요소인 '근무성과 자질'의 세부적인 개별항목의 하나로서 법관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굳이 법관평가 결과를 새로운 근무평정 항목으로 신설할 필요성도 적은 것으로 판단됨

3)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의 근무평정에 재량반영 내지 의무 반영하는 안(이하 ‘재량반영’ 또는 ‘의무반영’이라 한다) 모두 근무평정 항목에 법관평가 결과 항목을 표기해야 현재와 달리 법관평가 결과가 법관의 근무평정에 반영될 수 있음
- 재량반영은 법관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도 평정권자에게 재량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관평가 결과를 근무평정 항목에 별도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의무반영이 되는 것임. 의무반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나, 재량반영의 경우 별도의 평가항목을 신설할 필요는 없고 기존 항목 중의 하나로 반영될 수는 있음
- 세부평가 항목 중 어느 항목에 넣을 것인지 실질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명기하지 않으면 평정권자 입장에서 어느 항목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나. 평정권자에게 결과가 통보되는 법관평가 대상법관 및 자료의 범위

1) 결정사항

평정권자에게 통보되는 대상법관의 기준을 5인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지 말고, 법관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대상법관의 기준이 정해져야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논의함이 바람직함

2) 법관평가제도 TF에서 논의된 의견

■ 변호사 위원들

- 일정 유효 평가수(5인)를 충족한 법관에 대하여 해당 평가결과를 평정권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무평정에 반영. 단, 5인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



관의 경우에는 전체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를 적용

- 법관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평정권자에게 전달함(법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 전체 평가표의 수, 일정 유효 수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의 수, 평균 점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

■ 법관 위원들

- 유효한 수의 평가를 받지 못한 법관과의 형평성 문제나 평가의 객관성 문제는 여전히 발생함[법관평가의 방식 중 우수법관, 하위법관 선정 기준(표본의 수)의 적절성 부분⁸⁾ 참조]
- 통보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평가점수 이외에 평가표,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 전체 평가표의 수, 일정 유효수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의 수, 평균 점수 등 각종 통계자료 등이 폭넓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3)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법관평가를 받은 전체 법관 중 5인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이 5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⁹⁾, 5인 이상 평가를 받지 못한 법관 전부에게 전체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현재 상황으로는 5인 이상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
- 해당 쟁점은 법관평가를 받는 법관과 받지 못하는 법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이자, 실질적으로 평가율과 관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평가율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재량반영을 전제로 한다면, 5인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은 평정자료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5인 이상 평가를 받지 못한 법관은 기존 평정자료로만 평가를 하면 됨
- 기간을 두고 평가율을 제고해야 하고, 법관평가 대상 범위와 관련한 어떠

8) 본 보고서 제19면 부분

9) 일부 지방변호사회의 경우는 5인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으나, 법관평가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는 2018년 45.1%, 2019년 42.8%였음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5인'이라는 특정 기준을 명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추상적인 기준만을 마련할 경우 추후 이런 기준을 누가 판단하여 정할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다.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불복 절차 또는 검증절차

1) 결정사항

현행 근무평정 결과의 고지 및 이의 절차(「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9, 10조)와는 별도로 평가자료에 대한 '평정권자의 확인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다만 확인절차에서 평가자의 실명(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 포함)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법관평가제도 TF에서 논의된 의견

■ 변호사 위원들

-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불복절차는 법관 근무평정 전반에 대한 이의·불복 제도의 설계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 법관평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관 위원들

- 법관평가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근무평정 결과의 고지 및 이의 절차와는 별도의 이의·불복절차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함

3)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현행 법관평가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의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점, 중복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점, 재판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법관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존재하고,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평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해당법관은 그 결과를 통보받고 평가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



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이의·불복절차 마련이 필요함

- 다만, 이의·불복절차를 도입할 경우 피평가자인 법관이 평가자인 변호사를 알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 평정권자의 ‘검증절차’임. 즉, 검증절차는 해당 법관은 법관평가 결과를 알지 못하고 평정권자가 필요한 경우 법관평가 기관에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법관평가의 내용을 파악하는 절차임
- 현행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9, 10조에 평정결과의 고지 및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신청요건, 조치, 시기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사후적인 불복절차임. 평정권자가 법관평가 결과를 재량적으로 반영할 경우, 하위법관으로 평가받은 경우 또는 법관평가 점수가 다른 평정자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례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이의·불복절차가 필요함
- 이의·불복절차 또는 검증절차는 법관평가 결과의 활용 정도, 근무평정 항목에 반영 여부 등과 연관된 문제임. 반영 정도가 높고 근무평정 항목에 별도 기재될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임
- 법관평가에 참가한 변호사가 당해 재판에 관여하였는지, 중복적 평가는 아닌지 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의무반영, 재량반영이든 별도의 이의·불복절차는 필요 없음. 법관평가 결과는 변호사 1인만의 평가가 아니고, 다수의 변호사의 평가이므로 1인 변호사의 주관적, 감정적 판단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평가 변호사의 실명이 피평가자인 법관에게 전달된다거나 이의·불복절차에서 평가 변호사에게 직접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면 법관평가에 참여할 변호사가 없을 것임.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등의 검증절차가 담보된다면 별도의 이의·불복절차는 필요 없음
- 새로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그 도입에 어려움이 있고, 법관평가 결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서라도 검증절차 등이 필요함. 평정권자의 입장에서도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고 평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확인절차 등이 필요함

-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외부 평가에 대한 검증이나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면 그 결과에 쉽게 동의할 수 없고, 기존의 이의·불복절차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익명성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3차 회의 이후 변호사 위원들이 ‘검증절차’라는 용어가 마치 ‘조사’를 한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므로 ‘확인절차’로 용어를 바꾸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 의견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함
- 평정권자의 확인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확인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 위원들은 ‘평정권자에게도 평가자의 실명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평가자의 익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관 위원들은 ‘평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자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평가자의 실명이 피평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평정권자’가 아닌 ‘법관평가기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피평가자에게 평가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법관평가기구의 업무 범위나 역할에 대하여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절차의 주체를 법관평가기구로 제한하기는 어려움. 확인절차와 법관평가기구의 업무 범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

라. 법관평가 결과의 해당법관 전달 여부

1) 결정사항

별도의 ‘평정권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이상(다.항) 해당법관에 대한 법관평가 결과 전달은 필요 없음



2) 법관평가제도 TF에서 논의된 의견

▣ 변호사 위원들

- 법관인사평정제도 전반에 대한 이의절차 정비 시 반영 가능. 다만, 법관 평가 결과가 근무평정에 반영될 경우, 개별 법관에 대한 평가결과 전달은 불필요함. 평가결과가 근무평정 중에 포함되므로 근무평정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것임

▣ 법관 위원들

- 법관평가 결과가 근무평정 등에 반영되는 경우 해당법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그 결과를 알려주어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필요. 단, 검증절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에 대한 전달은 필요하지 아니함)

3)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경우 이의·불복절차나 검증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결과를 법관 또는 평정권자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쟁점임

마.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1) 결정사항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권고하기로 함

-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할 경우에는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가 평정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 기준 및 공개 기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를 지양하되, 공개를 하게 되더라도 우수법관을 포함하여 실명이 아닌 사례 중심의 공개, 법관평가 기준·방법·표본 수 등의 통일 및 구체적 공개, 공개 주체의 단일화 등이 필요함



2) 법관평가제도 TF에서 논의된 의견

■ 변호사 위원들

- ① 우수법관 실명 공개(하위법관 미공개), ② 익명 처리된 사례에 한하여 현행과 같이 언론 공개

■ 법관 위원들

- 법관평가 결과가 근무평정 등에 반영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인사자료의 공개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법관평가 결과가 재량으로라도 근무평정에 반영이 된다면 인사자료의 공개에 해당하여 공개는 부적절함
- 공개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더라도 우수법관에 한해서는 그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함. 국민들이 법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법관평가 공개이고, 법관의 근무평정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신뢰 제고를 위한 것임
-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하나, 현행 법관평가의 경우 우수법관의 선정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그 기준도 명백하지 않는 등 법관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우수법관 사례 공개는 반대하지 않음. 다만, 우수법관으로 실명이 공개될 경우, 평정권자는 언론에 공개된 우수법관의 법관평가 결과를 평정에 반영할지 내지 반영 정도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우수법관 사례 및 하위법관 사례 공개로도 변호사협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관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바. 법관평가기구

1) 결정사항

법관평가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관평가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관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하며, 법관평가기구에는 변호사 외에 법관 및 외부위원 등도 참여함

외부위원 참여 비율 및 법관평가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대한변협 집행부의 입장은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용하기로 결정 되었으며, 이후의 논의는 법관평가기구에 위임하기로 함

2) 법관평가제도 TF에서 논의된 의견

- 법관평가기구 담당기관 및 통일된 기준 마련, 법관 및 외부인사의 법관평가기구 참여 여부, 법관평가기구의 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3)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와 논의를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기구가 통일된 법관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방변호사회가 그 기준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 법관평가기구의 ‘구성’ 및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현재 법관평가가 각 지방변호사회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각 지방변호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평가기구를 두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함. 법관평가기구를 변호사 이외의 위원들과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외부위원의 구성 및 참여 비율에 대하여는 논의 중임



사.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사건 관여 여부 검증절차

1) 결정사항

평가자료 수집·취합의 단계에서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사건 관여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 될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하기로 함

2) 법관평가제도 TF에서 논의된 의견

■ 현행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사건 관여 여부 검증절차의 존부

- 법관 위원들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평가표가 제출된 후 평가자인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음

서울 10)	경기 북부	인천	경기 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	×	×	×	×	×	×	×	×	×	×	×	×

■ 변호사 위원들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원칙적으로 평가 변호사의 실명 확인은 허용될 수 없음. 법원이 대리인(변호인)이 선임된 모든 사건 중 변론이나 공판에 관여한 대리인(변호인)의 명단을 변호사단체와 공유하고 이를 일일이 검증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법관 위원들

- 평가자가 실제로 해당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법관평가 유효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의 전제조건이므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법관평가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1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표에 사건번호와 법관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건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건번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의 사건관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함



3)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평가자가 해당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원들 모두 동의함
- 경유증표는 사건 관여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통하여 사건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 현재 법원 시스템상으로 해당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현재 단계에서 하나씩 수동으로 확인하기 위한 인적·물적 한계가 있음
- 평가자료 수집·취합단계에서 사건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고, 구체적·기술적 구현 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가 필요함
- 법관평가표에 사건번호 외에 변호사등록번호가 기재되므로 법원에 알려지기 이전에 실무자들이 이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된다면 법관평가표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평가자인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사건 관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 관하여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건 관여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아. 법관평가 방식 및 내용

1) 법관평가의 방식

▣ 법관평가에 대한 낮은 참여율로 인한 신뢰성 문제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 현재로서는 법관평가제도 TF 및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관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안을 검토·시행하는 과정에서 점



차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서 법관평가에 대한 낮은 참여율로 인한 신뢰성 문제에 관하여 의결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 우수법관, 하위법관 선정 기준(표본의 수)의 적절성

● 법관평가제도 TF 회의 자료

- 법관 위원들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2017~2019년도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선정 시 몇 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질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음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우수] 5 [하위] 10	선정 안함	[우수] 3 [하위] 5	[17년] 5 [18년] 10 [19년] 7	5	청주 15 충주 7 제천 5 영동 5	10	[17년] 5 [18년] 10 [19년] 10	20	10	[우수] 10 [하위] 선정 안함	[우수] 본원15 지원10 [하위] 15	10	[17년] 30 [18년] 20 [19년] 평가 안함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관평가 운영기준의 마련 및 전국적 통일, 이에 대한 법관평가기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추가 의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 중복평가 방지시스템의 준비

● 결정사항

중복평가를 방지할 기준을 수립하여 중복평가를 방지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하기로 함

● 법관평가제도 TF 회의자료

- 법관 위원들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중복평가 방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음



서울	경기 북부	인천	경기 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	×	×	×	×	×	×	×	×	×	×	×	×

-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경우, 제출된 법관평가표에 기재된 법관명과 사건번호를 토대로 수작업으로 중복평가를 거르고 있고, 구체적으로 ① 동일한 회원이 동일한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관을 평가한 경우, 최초 접수 1건 외에는 미반영, ② 동일한 회원이 다른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관을 평가한 경우, 최초 접수 1건 외에는 미반영, ③ 동일 사무소 소속 회원이 동일한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관을 평가한 경우, 최초 접수 1건 외에는 미반영한다고 답변하였음

■ 해당 사건이 종국되기 전에 제출된 평가표의 처리

● 결정사항

향후 법관평가 항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하기로 함

● 법관평가제도 TF 회의자료

- 법관 위원들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법관평가표 중 재판결과에 대한 항목(10번 문항)을 미답변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음 :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10번 문항에서 재판결과만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번 문항을 재판결과가 도출된 것을 전제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건이 종국되지 아니하여 10번 문항을 미답변한 법관평가표의 경우, 1 내지 9번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10번 문항의 점수로 부여하고 있음

■ 권역 외 법원의 사건에 대한 법관평가표의 처리

● 결정사항

향후 법관평가 항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하기로 함



● 법관평가제도 TF 회의자료

- 법관 위원들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소속 변호사가 권역 외 법원에서 사건을 수행할 경우 법관평가표를 어디에 제출하도록 하는지(소속 지방변호사회인지 아니면 해당 법원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인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음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소속회	○	○		○	○		○							
법원 지역 지방회			○			○		○	○	○	○	○	○	○

2) 법관평가의 내용(법관평가표의 항목 등 관련)

▣ 항목별 점수화 평가 방식의 유지 여부

● 결정사항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 '서술식 평가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하기로 함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현재 법관 근무평정이 3단계이고, 현행 법관평가 초기에도 3단계로 시행되었음. 법관평가 단계를 상·중·하 3단계로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관평가가 3단계 평정방식에서 5단계 평정방식으로 세분화된 것은 변호사들의 의견 취합과정에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임. 평가자 입장에서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평가하기가 편한 점이 있음.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
- 하위법관에 관하여 점수만 기재되면 실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유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서술식 기재가 바람직하고, 구체적 근거나 설명이 있어야 함. 하위법관의 평가에 있어서는 서술식 평가 기재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사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정권자가 납득하기 수월하고, 평가결과 반영 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법관평가에 대하여 부담을 느껴 참여를 주저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서술식으로 기재하도록 강제하면 평가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음. 다만 이에 관하여 부적격 내지 최하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구체적 사례나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권고한다는 문구를 적는 것은 가능함

▣ 법관평가표의 개별 문항에 대한 검토

● 결정사항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 '법관평가표의 개별 문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고하기로 함

● 법관평가제도 TF 회의자료

- 증거신청 채부 등 재판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 변호사의 변론의 준비 정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법관평가 항목의 구체적 내용으로 삼은 것에 우려는 나타내는 법관들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내용

- 법관평가표 양식의 전국적 통일 여부는, 법관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두고 평가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임
- 법관평가표의 개별 문항에 대한 검토는, 피평가자인 법관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법관평가기구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결어

- ▣ 법관평가제도 TF 제1~4차 회의 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각 중간보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외부위원들까지 참가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서 제1~6차 회의를 거쳐 보다 심층적인 논의 후 쟁점별로 건의사항을 결정함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서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방안(제2안)'에 대해서 논의하되 이를 시행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피평가자인 법관들이 요구하는 현행 법관평가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법관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방안(제2안)을 시행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사항들이 충족되어 법관평가를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할 경우, 법관평가는 법관 근무평정 항목의 세부항목 또는 설명으로 명시하고, 현행 근무평정 결과의 고지 및 이의 절차와는 별도로 평가자료에 대한 평정권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며, 다만, 확인절차에서 평가자의 실명(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 포함)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해당법관에게 법관평가 결과를 전달하지 않으며, 향후 설립되는 법관평가기구에,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를 지양하되 공개를 하게 되더라도 우수법관을 포함하여 실명이 아닌 사례 중심의 공개, 법관평가 기준, 방법, 표본 수 등의 통일 및 구체적 공개, 공개 주체의 단일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권고하기로 함
- 법관평가기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되, 법관평가기구는 법관평가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관평가 업무를 관리·감독함. 다만, 법관, 외부인사 참여 비율 및 법관평가기구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함
- 법관평가 방식은 객관성, 공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법관평가는 평가자료 수집·취합단계에서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해당 사건 관여 여부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구현 방식에 관하여는 계속적 논의가 필요함. 중복평가를 방지할 기준을 수립하여 중복평가를 방지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하기로 함. 해당 사건이 종국되기 전에 제출된 법관평가표, 권역 외 법원의 사건에 대한 법관평가표의 처리는 통일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법관평가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 현재 객관식 문항에 서술식 평가의 보완 및 법관평가표의 개별 문항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기로 함
- 법관 근무평정 내지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평가자료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의 구현을 위한 법관에 대한 평가의 다원화와 개방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그 논의가치가 큼. 한편으로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관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됨
- 법관평가제도 TF 및 특별위원회는 법관평가의 취지¹¹⁾, 비교법적 검토¹²⁾ 등 법관평가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도 함께 고찰하였고, 현재 법관평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법관의 근무평정의 반영 가부 및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개별적으로 각 연구·검토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 특히 법관평가 결과의 활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법관평가제도 TF 및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법관을 포함한 일반 국민, 변호사, 다양한 재판 관계자 등과 함께 법관평가제도에 관한 전방위적인 논의와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4.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 시행을 위해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협의를 거쳐, 법관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한다.
- ② 법관평가기구에는 법관을 비롯한 외부 위원이 참여한다.

11) 변호사팀 중간보고서 제1면 및 제3면 참조

12) 법관팀 중간보고서 제3 내지 6면 참조



-
- ③ 법관평가기구는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서 권고된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사항(법관평가의 통일적 기준 등 2021. 6. 9.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쟁점별 결정사항)을 새로운 법관평가제도에 반영하도록 한다.